

1. 개정이유

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,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에 범정부적 노력 중으로,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 등 각종 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, 세부 내용은 교육부·국토부·행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, 공동부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부령 상 노인 보호구역 지정 범위에 도로교통법 상 내용인 노인 왕래가 잦은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빠져 있어, 규정 미비 보완(안 제2조 제2호 ‘마’목)
- 나. 도로교통법에서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한 공동부령상의 시설 또는 장비 규정 개정(안 제7조제2항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, 2월 중 실시 예정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교육부령 제 호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

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 ‘마’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

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1.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

2. 도로반사경

3. 방호울타리

4.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

관한 규칙」에 적합한 시설

③ 시장등은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

2. 도로반사경

3. 과속방지시설

4. 미끄럼방지시설

5. 방호울타리

6.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한 시설

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.

별표 중 보호구역 도로표지(제7조제2항제1호 관련)를 보호구역 도로표지(제7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관련)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노인복지시설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	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u>마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</u>
제7조(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)	
① 생 략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	<u>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</u>
1.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	<u>1.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</u>
2. 도로반사경	<u>2. 도로반사경</u>
3. 과속방지시설	<u>3. 방호울타리</u>
4. 미끄럼방지시설	<u>4.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</u>
5. 방호울타리	<u>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</u>
6.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·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	

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한 시설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. <신 설>	로부속물로서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등은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 1.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. 도로반사경 3. 과속방지시설 4. 미끄럼방지시설 5. 방호울타리 6.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한 시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.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경찰청 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